

붙임1 선거 및 캠페인 지침(Elections & Campaign Guidelines)

□ 개요

- 본 선거 및 선거운동 지침은 OCA 선수위원회 선거에 출마하는 모든 후보자와 후보를 추천한 국가올림픽위원회(NOC), 국가선수위원회(NAC), 그리고 후보자를 위해 또는 후보자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는 모든 개인 및 단체의 선거운동 활동을 규율한다.
- OCA 선수위원회 후보자, NOC 및 NAC는 OCA 헌장, OCA 선수위원회 선거 절차 및 선거·선거운동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 본 지침의 요구사항을 위반하는 후보자, NOC 또는 선수위원회가 있을 경우, 해당 후보자의 OCA 선수위원회 선거 후보 자격은 취소된다.

□ 선거운동(선거 전 ~ 선거 기간)

- a. 후보자의 선거운동은 OCA 선거 절차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여기서 선거운동이란 특정 후보에 대한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모든 행위 또는 활동을 의미하며, 광고, 선거운동 또는 후보 당선을 목적으로 계획되거나 조직된 모든 활동을 포함한다.
- b. 후보자를 위한 모든 선거운동은 올림픽 가치를 기반으로 품위와 절제, 다른 후보자 및 선수들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모든 후보자는 자신을 홍보할 수 있으나, 다른 후보를 반대하거나 비방하는 선거운동은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되지 않는다.
- c. 후보자는 자신의 출마를 홍보하기 위해 소셜미디어를 사용할 수 있다.
- d. 다음과 같은 선거운동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금지된다.
 - 모든 형태의 선물, 기념품, 답례품 또는 증정품을 배포하는 행위
 - 특정 후보에게 투표하도록 금전적 또는 기타 형태의 혜택이나 유인책을 제공하는 행위
- e. 후보자, 후보를 추천한 NOC 및 후보자를 위해 또는 후보자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는 모든 개인 및 단체는, 선거 절차 및 본 지침 제1조부터 제4조까지에서 금지한 선거운동 행위에 대해 개별적으로뿐만 아니라 연대하여 책임진다.

붙임2 선거 매뉴얼(Election Manual)

본 매뉴얼은 아시아경기대회 기간 중 실시되는 OCA 선수위원회 위원 선거 절차에 대한 종합적인 안내서이다. 본 매뉴얼은 선거 절차를 보완하며, 모든 이해관계자가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다.

1. 개요

- OCA 선수위원회 선거는 선거 절차에 따라 운영되며, 해당 절차에는 후보 추천, 투표 및 선거 이후 절차가 규정되어 있다.
- 본 매뉴얼은 이러한 절차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제공하여, 선거가 일관되고 투명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마련되었다.

2. 목적

- 선수들의 의견과 권익을 효과적으로 대변할 수 있는 위원을 선출한다.
- 투명하고 포용적이며 공정한 선거 절차를 보장한다.
- 선거 전 과정에서 공정성과 청렴성의 원칙을 유지한다.

3. 역할 및 책임

- a. OCA 선수위원회/선수부서(AC)
 - 선거 절차가 준수되도록 선거 전 과정을 관리 · 총괄한다.
 - NOC 및 후보자에게 선거 관련 자료를 준비하여 배포한다.
- b. OCA 윤리위원회
 - 후보자의 자격을 심사한다.
 - 선거가 윤리기준에 따라 진행되는지 감독한다.
- c. 국가올림픽위원회(NOC)
 - 선거 후보자를 추천한다.
 - 선수들에게 선거 관련 지침을 안내하고 투표 참여를 지원한다.
- d. 후보자
 - 윤리적이고 책임감 있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실시한다.
 - OCA 후보자 행동강령을 준수하며 공정하게 활동한다.

4. 선거 일정 * 하계 아시아경기대회 기준

주요 일정	시기
선거 공고	선거 시작 최소 45일 전
후보 추천서 제출	최초 공문에서 안내한 마감일까지
후보자 자격 확정 발표	선거 시작 14일 전
선거 기간	개회식 다음 날부터 폐회식 2일 전까지
결과 발표	투표 종료 후 24시간 이내

5. 투표 지침

a. 투표권

- 선거 기간 중 “F” Accreditation을 소지한 선수는 투표권을 가진다.
대리투표는 허용되지 않는다.

b. 투표 장소

- 선수촌 및 OCA가 승인한 지정 장소에 투표소를 설치한다.

c. 투표 절차

- 선수는 투표소에서 출입증을 제시하여 투표 자격을 확인한다.
- 투표는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한 전자투표 시스템으로 진행된다.
- 유권자는 1인당 1표를 행사한다.
- 투표의 비밀은 보장되며 투표 결과는 안전하게 기록된다.

d. 대체 투표 방식

- 대면 투표가 불가능한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OCA가 원격 전자투표 방식을 마련하고 그 절차를 모든 NOC에 안내한다.

6. 후보자 선거운동 지침

a. 선거운동 기간

- 선거운동은 후보자 명단이 공식 발표된 이후부터 투표 종료 시까지 가능하다.

b. 선거운동 방법(후보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함)

- 윤리적 기준을 준수하여 선거운동을 실시한다.
- 다른 후보자를 비방하거나 부정적인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
- 유권자에게 금품이나 혜택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

- 투표소 주변에서의 선거운동은 엄격히 금지된다.
- c. 선거홍보물
 - 모든 선거홍보물은 배포 전 OCA 윤리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7. 선거 감독 및 분쟁 해결

- a. 선거 감독
 -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독립적인 선거 참관인이 지정된다.
 - 전자투표 시스템에 대한 정기적인 감사가 실시된다.
- b. 분쟁 해결
 - 분쟁은 발생 후 48시간 이내에 서면으로 OCA 윤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 OCA 윤리위원회는 분쟁 접수 후 5일 이내에 해당 분쟁을 처리한다.

8. 선거 종료 후 보고

- a. 결과 발표
 - 선거 종료 후 24시간 이내에 결과를 발표한다.
 - 발표 내용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다.: 당선자의 성명, 총 투표수
- b. 선거 결과 보고서
 - OCA는 다음 내용을 포함한 상세한 선거 결과 보고서를 발간한다.: 투표율, 후보자별 득표수, 선거 참관인의 의견 및 관찰 결과

9. 후보 사퇴

- 후보자는 투표 시작 최소 7일 전까지 OCA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후보 등록을 철회할 수 있다.
- 투표용지가 준비된 이후 후보가 사퇴하는 경우, OCA는 투표소 공지 등을 통해 유권자에게 이를 안내한다.

10. 위원 교체

선수위원이 사임하거나 임기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OCA 선수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OCA가 후임자를 지명할 수 있다.

11. 선거 보안 및 무결성

- OCA는 유권자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암호화가 적용된 안전한 전자투표 시스템을 사용한다.
- 모든 데이터는 안전하게 보관되며, 권한이 있는 담당자만 접근할 수 있다.
- 선거 종료 후 감사를 실시하여 결과의 정확성을 검증한다.

12. 맺음말

- 본 매뉴얼은 OCA 선수위원회 선거가 투명하고 공정하며 포용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마련되었다.
- 모든 이해관계자는 선거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해 본 매뉴얼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일반사항

- 본 선거 절차는 OCA 선수위원회 위원의 선거 절차를 규율한다.
- 본 선거 절차는 OCA 선수위원회 운영규정(Terms of Reference)과 함께 적용된다.

2. 후보자 자격

선수위원회 위원으로 출마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자격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선거 시점을 기준으로 후보자는 다음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a. OCA 회원인 국가올림픽위원회(NOC)를 대표하여 출전한 선수일 것
- b. 만 18세 이상이며, 세계도핑방지규약(World Anti-Doping Code)에 따른 도핑 위반 제재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 c. 선거 당시 현역 선수이거나, 직전 2회의 아시아경기대회(하계 또는 동계) 중 최소 1회에 “F” Accreditation을 소지한 선수로 참가한 경력이 있을 것
- d. 해당 NOC 선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NOC가 추천한 후보일 것(각 NOC는 후보자 1명만 추천할 수 있다. 다만 해당 NOC 출신 선수가 이미 OCA 선수위원회 위원으로 재직 중인 경우에는, 하계·동계 종목 여부와 관계없이 추가 후보를 추천할 수 없다.)
- e. 영어로 원활하게 의사소통할 수 있을 것

3. NOC 자격

후보자를 추천하는 NOC는 선거 시점에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a. OCA 회원 NOC일 것
- b. IOC 선수위원회 가이드라인에 부합하는 NOC 선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을 것

4. 후보 추천 절차

- a. OCA는 선거 시작 최소 45일 전 모든 NOC에 후보 추천 요청 공문을

발송한다.

- b. 후보 추천 마감일은 해당 공문에서 안내한다.
- c. 후보 추천은 AC Candidate Proposal Form에 요구되는 모든 정보를 기재한 경우에만 유효하다.
- d. OCA 윤리위원회는 OCA 선수위원회 운영규정(Terms of Reference) 및 선거 절차에 따라 모든 후보자의 자격을 심사한다.
- e. 후보자 또는 NOC가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후보자 명단 발표 전에 해당 NOC에 통보한다.
- f. OCA는 선거 시작 최소 14일 전 모든 NOC 및 NOC 선수위원회에 자격을 충족한 후보자 명단을 통보한다.

5. 선거

- a. OCA 선수위원회 선거는 각각 하계 아시아경기대회 및 동계 아시아경기대회 기간 중 실시한다. 다만, 아시아경기대회 기간 중 선거를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OCA가 대체 투표 방식을 마련하여 모든 NOC 및 선수위원회에 안내한다.
- b. 선거 기간은 하계 아시아경기대회의 경우 개회식 다음 날부터 폐회식 2일 전까지, 동계 아시아경기대회의 경우 개회식 다음 날부터 폐회식 1일 전까지로 한다.
- c. 선거 기간 중 아시아경기대회에서 “F” Accreditation을 소지한 선수는 1인당 1표의 투표권을 가진다. 대리투표는 허용되지 않는다.
- d. 투표는 선수촌 내 또는 OCA가 지정한 기타 장소에 설치된 지정 투표소에서만 실시한다.
- e. 투표는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아시아경기대회 기간 중 안전하게 보호되는 전자투표 플랫폼을 이용하여 실시한다.
- f. OCA는 ‘OCA AC Election Manual’ 을 작성하여 선거와 관련된 세부 사항을 제공한다.

※ OCA 선수위원회 당선자

- g. 하계 아시아경기대회에서는 동아시아,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아 및 서아시아의 5개 각 권역에서 최다 득표한 선수 1명을 OCA 선수위원회 위원으로 선출한다.

* 실제 선출되는 성별은 i항의 규정(기존 위원과 반대 성별)에 따라 결정됨

- h. 동계 아시아경기대회에서는 회원 NOC 소속 후보자 중 최다 득표한 선수 1명을 OCA 선수위원회 위원으로 선출한다.
- i. 하계 아시아경기대회 선거에서 특정 권역에 이미 이전 선거에서 선출된 남성 선수위원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권역에서는 여성 후보만 출마할 수 있으며, 반대로 여성 선수위원이 있는 경우에는 남성 후보만 출마할 수 있다.
- j. OCA 선수위원회에는 동일 종목 또는 동일 국가(지역) 출신의 선출위원이 2명 이상 있을 수 없다.

권역	선출 방식
동아시아	권역별 최다 득표자 1명(기존 위원과 반대 성별)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서아시아	
동계 아시아경기대회	남녀 구분 없이 최다 득표자 1명

- k. 동계 아시아경기대회 선거에서는 현재 OCA 선수위원회에 대표를 두고 있지 않은 NOC만 후보를 추천할 수 있다.
- l. 선거에서 동점자가 발생한 경우, 아시아경기대회 참가 횟수가 더 많은 후보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참가 횟수도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인 후보를 당선자로 한다.
- m. 하계 아시아경기대회 선거에서 특정 권역으로부터 후보자 추천이 없는 경우, OCA는 권역별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해당 권역의 선수 대표를 지명할 수 있다.
- n. 동계 아시아경기대회 선거에서 후보자 추천이 없는 경우, 동계종목 선수대표를 선수위원회 위원으로 지명할 수 있다.

6. 선거 장소

- a. 선거는 선수촌 및 OCA가 지정한 장소에서 실시하며, 비밀투표가 보장

되는 투표소를 설치한다.

- b. OCA는 모든 후보자에게 선거 기간 동안 모든 선수촌과 투표소에 동일하게 출입할 수 있도록 출입증 또는 필요한 출입권 업그레이드를 제공한다.

7.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 a. 선거 직후 개최되는 첫 번째 회의에서 선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며, 임기는 다음 선거까지 4년이다. 즉시 선거를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체 투표 방식을 적용한다.
- b. 위원장 및 부위원장 후보자는 투표 전날 오후 3시(현지시간)까지 후보 등록서를 서면으로 OCA에 제출해야 한다.
- c. 위원장이 여성인 경우 부위원장은 남성이어야 하며, 반대의 경우도 동일하다.
- d. 선거는 원칙적으로 비밀투표로 실시하며, 특별한 경우 OCA가 별도의 방식을 결정할 수 있다.
- e. 후보자는 투표 전 3분 이내의 정견발표를 할 수 있다.
- f. 선수위원회의 선출직 및 지명직 위원 모두 투표권을 가진다.
- g. OCA는 선수위원 3명을 개표위원으로 지정하여 투표 결과를 개표하고 검증하도록 한다. 위원장 후보자는 개표위원이 될 수 없다.
- h.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모두 과반수 득표를 얻어야 당선된다.

① 위원장

- 선출직 위원만 위원장이 될 수 있다.
- 올림픽 종목에서 활동하였거나 현재 활동 중인 선출직 위원만 후보로 출마할 수 있다. 과반수 득표 시 당선된다.

② 부위원장

- 선출직 및 지명직 위원 모두 출마할 수 있다.
- 비올림픽 종목에서 활동하였거나 현재 활동 중인 선수도 후보로 출마할 수 있다. 과반수 득표 시 당선된다.
- 부위원장 후보가 없을 경우 OCA 회장은 신임 위원장과 협의하여 추후 선수위원 중에서 부위원장을 제안할 수 있다.

붙임4 운영규정(Terms of Reference)

□ 일반사항

- 2026년 1월 19일 제105차 OCA 집행위원회에서 승인되었으며, 승인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OCA 선수위원회는 OCA 헌장 및 규정 제24조 제2항에 따라 운영된다.

1. 목적, 사명 및 핵심 목표

- 1.1 OCA 선수위원회의 사명은 아시아 선수들의 목소리를 아시아 올림픽운동의 최고 의사결정 수준까지 전달하고, 그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다.
- 1.2 이를 위해 OCA 회원 NOC의 국가선수위원회(NAC)를 활성화하여 선수들의 의견을 체계적으로 수렴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 1.3 NOC에 선수위원회가 없는 경우 OCA 선수위원회는 설립과 활성화를 지원한다.
- 1.4 OCA 선수위원회는 OCA 내에서 인정되는 아시아 선수들의 유일한 공식 대표기구이며, OCA 집행위원회에 권고와 자문을 제공한다.
- 1.5 핵심 목표
 - a. 선수 관점이 OCA의 모든 의사결정에 반영되도록 한다.
 - b. 올림픽운동에서 선수의 권리를 보호하고 필요한 권고를 제시한다.
 - c. 모든 NOC 선수위원회에 모범사례, 정보 및 지원을 제공한다.
 - d. ANOC 및 IOC 선수위원회와 협력하여 선수와 국가선수위원회를 지원한다. OCA 사무총장의 승인 아래 도핑방지, 스포츠 청렴성 등 선수 관련 국제회의에서 OCA를 대표한다.
- 1.6 OCA 산하 위원회와 실무그룹에 선수대표를 추천하여 선수의 관점을 반영한다.
- 1.7 아시아경기대회, 동계아시아경기대회, 실내무도경기대회, 비치게임, 청소년아시아경기대회에는 OCA 선수위원 2명이 대표단으로 참가한다.
- 1.8 OCA 집행위원회는 선수 관련 사안을 선수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2. 구성

2.1 선수위원회 구성

- a. 하계아시아경기대회 선출위원 10명
 - 동아시아 남녀 각 1명
 - 남아시아 남녀 각 1명
 - 동남아시아 남녀 각 1명
 - 중앙아시아 남녀 각 1명
 - 서아시아 남녀 각 1명
- b. 동계아시아경기대회 선출위원 2명
 - 남자 1명
 - 여자 1명
- c. OCA 집행위원회 지명위원 최대 4명(지역, 성별, 종목, 전문성, 위원회 연속성을 고려하여 임명한다.)

2.2 당연직 위원은 OCA 선수위원회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 a. IOC 선수위원장, 부위원장 또는 아시아 출신 IOC 선수위원

2.3 위원회에는 반드시 남녀가 모두 포함되어야 하며 IOC의 성평등 권고를 반영한다.

2.4 동일 NOC 출신 선출위원은 1명만 허용된다.

2.5 동일 종목 출신 선출위원도 1명만 허용된다.

2.6 위원장은 선출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2.6.1 올림픽 종목 선수만 출마 가능

2.6.2 부위원장은 선출직 또는 지명직 위원 모두 맡을 수 있다.

2.6.3 위원장이 여성이면 부위원장은 남성, 반대의 경우도 동일하다.

2.7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OCA 헌장 제16.2.4조에 따라 OCA 집행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되며 의결권을 가진다.

2.8 위원장은 ANOC 선수위원회의 당연직 위원도 된다.

3. 자격

3.1 선출직 후보자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a. OCA 회원 NOC를 대표하여 국제대회에 출전한 선수

- b. 선거 당시 현역 선수이거나 최근 두 번의 해당 아시아경기대회 참가(F Accreditation)
- c. 만 18세 이상
- d. WADA 도핑 제재 이력 없음
- e. NOC 및 NOC 선수위원회 승인
- f. 영어 의사소통 가능

3.2 지명직 후보

- a. OCA 회원 NOC를 보유한 국가의 국민일 것
- b. 만 18세 이상
- c. 도핑 제재 이력 없음
- d. 선수위원회 활동에 적극 기여할 의지

4. 임기

- 4.1 선출직 위원 임기는 4년으로 한다. 선출직 위원은 OCA가 별도로 정한 특별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역할과 책임을 지속적으로 성실히 수행하는 것을 전제로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최대 재임 기간은 8년으로 한다.
- 4.2 지명직 위원 임기는 4년으로 한다. 지명직 위원은 역할과 책임을 지속적으로 성실히 수행하는 것을 전제로 1회에 한하여 재지명될 수 있으며, 최대 재임 기간은 8년으로 한다.
- 4.3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기는 선출일로부터 4년 또는 OCA 선수위원회 위원 임기 만료일까지 중 먼저 도래하는 시점까지로 한다. 다만, OCA 선수위원회 위원 자격을 계속 유지하는 경우에는 재선될 수 있다.
- 4.4 모든 선수위원회는 OCA에 서면으로 통보하여 사임할 수 있다.
- 4.5 역할과 책임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지 않거나 자격요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못하는 선수위원회는 OCA에 의해 해촉되거나 교체될 수 있다.

5. 선거 절차

- 5.1 하계 선수위원회 선거는 4년마다 하계아시아경기대회에서 실시

5.2 동계 선수위원 선거는 4년마다 동계아시아경기대회에서 실시
선거는 OCA 선수위원회 선거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

6. 투표 조건

6.1 “F” Accreditation 선수가 투표권을 갖는다.

6.2 각 권역 최다 득표자가 당선된다. 동일 종목은 1명만 선출 가능하다.

6.2.1 동계 아시아경기대회는 전체 최다 득표자 1명이 당선된다.

6.3 동점일 경우, 아시아경기대회 참가 횟수 > 연장자 순으로 결정한다.

7. 회의

7.1 대면회의는 최소 연 1회 개최한다.

7.2 회의와 회의 사이에 필요한 논의 및 의사결정은 전자적 의사소통 수단
또는 온라인 회의를 통해 진행할 수 있다.

7.3 회의는 OCA 선수위원회 위원장의 요청과 OCA 사무총장)과의 협의에
따라 OCA가 주관하여 개최한다.

7.4 회의는 가능한 한 OCA 총회, OCA 연례 세미나, 선수포럼 또는 아시아
경기대회 기간에 맞추어 개최한다. 회의 종료 후 작성된 회의록 및 조
치사항은 후속 조치를 위해 OCA 사무총장에게 제출하며, 선수위원회
및 집행위원회와 공유한다.

7.5 OCA 선수위원회는 위원들을 위한 전용 웹 공간을 OCA 홈페이지 내에
둘 수 있으며, 해당 공간은 OCA가 관리한다.

7.6 OCA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선수위원회가 회의를 개최하고 부여된 역
할과 책임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책임이 있다.

7.7 회의 소집 통보(안건 포함)는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OCA 본부가 회의
개최 최소 30일 전에 발송하여야 한다. 온라인 회의는 필요한 경우 위
원장이 소집할 수 있으며, OCA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7.8 위원이 사전 통보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두 차례의 회의 또는 활동에
불참한 경우, 해당 위원은 교체 대상이 될 수 있다. 교체 여부는 OCA
집행위원회가 결정하며, 새로 임명되는 위원은 기존 위원의 잔여 임기
만 수행한다.

7.9 위원이 사망, 사임, 직무 수행 불능 또는 기타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OCA 회장은 OCA 선수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고 OCA 집행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해당 위원의 잔여 임기를 수행할 대체 위원을 임명한다.

7.10 OCA 선수위원회 회의의 의사정족수는 재적위원 과반수(50%) + 1명으로 한다.

8. 예산

OCA 집행위원회는 선수위원회 운영을 위한 예산을 배정할 수 있다.

9. 올림픽솔리대리티(OS) 지원

9.1 IOC는 대륙별 선수위원회에 연간 지원금을 제공한다.

9.2 지원금은 선수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사용하며, 사용내역은 매년 Olympic Solidarity에 보고한다. OCA는 관련 행정업무를 지원한다.

10. OCA 총회 보고

선수위원회는 매년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통해 OCA 총회에 활동을 보고한다.

11. 선수의 권리와 책임 선언

OCA는 선수의 권리와 책임 선언을 채택하며, 선수들이 이를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를 마련한다.

12. 운영규정의 해석

12.1 본 운영규정은 OCA 집행위원회 승인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12.2 OCA 헌장 및 규정과 상충되는 내용은 무효이다.

12.3 운영규정의 해석 권한은 OCA 집행위원회에 있다.

12.4 운영규정의 개정 및 추가는 OCA 선수위원회의 권고를 받아 OCA 집행위원회가 결정한다.

12.5 OCA 선수위원회는 언제든지 운영규정 개정안을 제안할 수 있다.